

	규 정	문서번호	TWI-A141	
		제정일자	2022. 02. 07	
	기타수당 시행 세칙	개정일자	. . .	
		개정번호	페이지	1/3

목 차

작성부서	사무처 재정과	제정일자	2022. 02. 07.
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승 인
직 책	팀 장	사무처장	기획예산처장			총 장
서 명						
일 자						



규 정

기타수당 시행 세칙

문서번호	TWI-A141
제정일자	2022. 02. 07
개정일자	. . .
개정번호	페이지 2/3

개정이력		
개정 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
	규 정	문서번호	TWI-A141	
		제정일자	2022. 02. 07	
	기타수당 시행 세칙	개정일자	. . .	
		개정번호	페이지	3/3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이라 한다) 교직원보수규정 제30조①항 1호에 따라 한시적 또는 비정기적 지급 필요가 인정되는 수당의 지급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기준 및 범위) ① 매 학년도 각 사업별 예산 범위내에서 총장의 재가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특별근무수당 : 장기근속, 대학에서 위임된 업무를 처리하는 교직원 및 근무기간 중 우수한 성과를 낸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
 - 가. 장기근속(근무)수당
 - 나. 우수교직원수당
 - 다. 국책사업우수교직원수당
 - 라. 일학습병행 사업 운영 교직원수당 : 업무관리, 책임교수, 학사운영, 성과수당

2. 산학협력수당 : 산학협력 강화 및 산업체 위탁교육 활성화 관련 참여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
 - 가. 산학협력수당
 - 나. 산학협력 학생 유치 수당

3. 입시수당 : 입시 진행, 홍보, 문제출제, 평가, 등록촉진, 학생유치 등에 참여하는 교직원에게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
 - 가. 입시관리수당
 - 나. 입시면접수당
 - 다. 입시위원수당
 - 라. 학생 유치 수당
 - 마. 기타 입시 수당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.